영산강·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임이자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18091

발의연월일: 2022. 11. 4.

발 의 자 : 임이자 · 최영희 · 지성호

김용판ㆍ이 용ㆍ김형동

이종성 · 양금희 · 서일준

박대수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영산강·섬진강 수계(水系)의 수자원(水資源)과 오염원(汚染源)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상수원 상류지역의 수질개선과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수계관리기금을 조성하고 영산강·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가 운용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나,

수계관리기금의 용도 및 지원대상이 수질개선에 편중되어 있어 먹는물의 안정적인 공급, 가뭄·홍수 등 재해로부터의 예방 등 안전한물관리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상황 및 여건을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거나 비용의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탄력적이고 융통성 있게 수계관리기금을 집행할 수 없는 상황임.

이에 영산강·섬진강수계의 물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계관리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들이 안심하고 사

용할 수 있는물 공급을 위해 적절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(안 제33조제14호 개정). 법률 제 호

영산강·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영산강·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3조제14호 중 "영산강·섬진강의 수질개선을"을 "영산강·섬진강수계의 물관리를"로, "사업"을 "사업이나 비용의 지원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3조(기금의 용도) 기금은 다	제33조(기금의 용도)
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	
하는 용도로 운용한다.	
1. ~ 13. (생 략)	1. ~ 13. (현행과 같음)
14. 그 밖에 <u>영산강·섬진강의</u>	14 <u>영산강ㆍ섬진강수계</u>
<u>수질개선을</u> 위하여 대통령령	의 물관리를
으로 정하는 <u>사업</u>	사업이나 비용의
	지원